원내 위원회 관리지침

제정 2020. 12. 29.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에서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·협의회·심의회, 연구반 등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·개편 및 폐지에 관한 기준·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위원회"란 위원회, 협의회, 심의회, 연구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구를 말한다.
 - 2. "관리부서"란 경영기획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 - 3. "운영부서"란 개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지침은 관계법령, 조례, 다른 규정 및 내규에 의하거나 진흥원의 필요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위원회에 적용하다.
 -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, 조례, 다른 규정 및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진흥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1. 관계법령 및 진흥원 내규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
 - 2.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
 - 3.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
 - ②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미리혐의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
 - 2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
 - 3. 기타 필요한 사항
 - ③ 관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제2항에 의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 - 1. 제1항의 설치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
 - 2.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
 - 3. 구성원의 구성 및 선임방법의 적정여부
 - 4. 기타 위원회 운영방법의 적정여부
 - ④ 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추진함에 있어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본부장 급부서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 - ⑤ 운영부서는 제3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위원회의 개편 및 폐지) ① 운영부서는 위원회를 개편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폐지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운영부서는 소관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.
 - 1.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소멸된 경우
 - 2.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 - 3. 운영상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
 - 4. 기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
- **제6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운영부서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②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운영부서는 위원회 개최 전에 자료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 자료 등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자료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운영부서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이 출장,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대리참석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제8조(자문료 등 지급) 운영부서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의 또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에게 진흥원의 수수료지급지침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자문비, 교통비, 원고료,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점검) ① 관리부서는 필요에 따라 진흥원의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.
 -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운영의 시정·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제10조(적용의 일부 제외) ① 감사, 성과평가 등 업무의 독립성 및 기밀성 등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<2020. 12. 2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